

수강포기 등 중도탈락에 따른 제한처분 추가 안내

Q. 수강포기 등 중도탈락에 따른 제한 처분의 적용시점은 언제인가요?

A. '18.7.1.부터 시행 중인 중도탈락에 따른 제한 처분은 '사유가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하며, '사유가 발생한 날'은 훈련종료일부터 적용됩니다.

- 고용센터 담당자의 결과보고확인(수료보고확인) 시점은 훈련기관의 수료보고 후 통상 2~5일 이 소요되나, 훈련생의 불이익 최소화를 위해 훈련종료일부터 카드 사용을 중지

* 센터 담당자 확인 시, 전산으로 자동으로 카드사용 중지토록 조치(별도 조치 불요, 시행)

- 훈련생이 수강포기를 한 경우 훈련생 또는 훈련기관에서 입력하는 수강포기 일부터 적용

Q. 당해 과정을 수료하지 못한 훈련생이 고용센터에서 결과보고(수료보고)를 확인하기 전에 새로운 훈련과정에 참여한 경우 제재 처분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훈련생이 고용센터의 결과보고 확인 전 새로운 훈련과정에 참여할 경우에는 HRD시스템(알림이나 메시지 등의 방법)을 통해 훈련기관에 훈련생의 미수료 사실 여부를 사전에 인지토록 하고, 고용센터에서 실시신고확인 시 확인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보완할 예정(2주 소요)입니다.

연번	성명	주민등록번호	카드유효시작일	훈련생구분 (비정규직구분)	훈련비			결제상태	훈련참여일	등록일	수정
			카드유효종료일		정부지원금	자비부담금	패널터자비부담금	결제금액			
1	김민준	310020 2-100000000	2017-07-12	선지원대상기업근로자 (정규직)	334,740			결제완료	2018-09-15	2018-08-27	수정
			2020-07-11		334,740	0	0	0			
2	최준서	200020 2-100000000	2017-09-29	선지원대상기업근로자 (정규직)	334,740			결제완료	2018-09-15	2018-08-27	수정
			2020-09-28		334,740	0	0	0			

훈련생 등록 시, 수료보고확인이 되지 않은 이전 훈련과정에 대해 수료조건(출석률)을 확인하여 미수료일 경우 별도의 표시를 통해 고용센터 또는 훈련기관에서 확인가능.

Q. '18.7.1 이전 중도탈락(3회) 등의 사유로 카드사용이 정지된 훈련생에 대한 구제방안은 무엇인가요?

A. '18.7.1 이전 중도탈락(3회) 등의 사유로 카드사용이 정지된 훈련생에 대해서는 이전 규정을 적용하여 카드 유효기간까지 사용을 정지합니다. 다만, 하반기 규정 개정(경과조치 마련)을 통해 구제 방안을 검토할 예정임을 알려 드립니다.